

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

*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하시기 바랍니다.
(일반건강검진, 생애전환기건강진단, 암검진, 영유아건강검진)

본 동의서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, 당뇨,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사후관리(건강상담·교육·금연·절주·운동·영양 등)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됩니다.

동의서 작성 후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(1577-1000)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○ 정보제공 범위

-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
- 건강검진정보 :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

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2년

○ 정보 활용기관 : 보건소

- ※ 귀하의 개인정보는 '개인정보보호법' 및 '건강검진기본법'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,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※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보건소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수검자 성명 : (서명)
주민등록번호 :
(영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) : (서명)
검진기관명(기호) : ()

결과활용 동의서 작성 안내

▶ 동의서 작성 대상자

☞ 금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동의서로서 본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원하시는 분

▶ 동의서 작성 예외자

☞ 검사결과 유소견 질환에 대한 보건소 사후관리를 원치 않으시는 분
 ☞ 다른 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수검하신 분 및 예정자
 (본원과 다른 검진기관에서 이중검진을 받으실 경우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.)

▶ 국가건강검진 안내

검진종별	검진항목	세부항목	발견질환	비고
일반	신체계측	혈압, 비만 등	고혈압, 비만도 등	
건강검진	소변검사	뇨단백	신장, 비뇨기계 질환	◎ 직장가입자 : -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- 사무직 근로자 중 금년도 대상자 (2년1회) ◎ 직장피부양자, 지역가입자: - 세대주 및 세대원, 피부양자 중 만40세 이상 흡수년도 출생자
	혈액질환	혈색소(Hb)	빈혈 관련	
	간기능검사	GOT, GPT, r-GTP	간장질환	
	고지혈증	T-cho, T.G, HDL-cho	콜레스테롤, 고지혈증	
	당뇨검사	식전 혈당(Glucose)	당뇨병	
	신장기능	크레아티닌(Creatinine)	신장질환	
	흉부검사	직접촬영	폐암, 폐결핵 등	
	구강검진	문진, 치아, 치주검사	우식증, 치은염 등	
암 검진	자궁경부암(여)	세포진검사	자궁경부암, 염증 등	만30세 이상 (2년1회)
	위암 검사	위내시경 및 조영촬영	위암, 궤양, 염증 등	만40세 이상 (2년1회)
	유방암 검사	유방 X-선 촬영	유방암, 유선염 등	
	대장암 검사	분잠혈 검사 양성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실시	대변(분잠혈) 검사	장내출혈 등
대장암, 용종 등				
생애 전환기	B형간염 검사	B형간염 항원, 항체	B형간염 감염 등	만40세, 만66세 해당자
	골밀도 검사	골밀도검사	골다공증 등	만66세 (여성)

▶ 관련 법적 근거

제16조 (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)

(1) 공단과 검진기관은 [건강검진기본법] 제18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“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” 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(2)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, 공단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